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55
----------	------

제출연월일 : 2004년 10월 6일

제 출 자 : 서순보 의원 외 6인

1. 개정이유

지방자치 의회의 활성화와 해당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양하고 폭 넓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요구한 자료는 관련부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안 제8조제3항)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4. 예산수반 사항 : 필요 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를 “요구한 자료는 관련부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8조(감사·조사 이외의 기간의 자료수집) ③사무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자료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u>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제8조(감사·조사 이외의 기간의 자료수집) ③----- 요구한 자료는 관련부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p>